

포르투갈 언론관계법

언론위원회법

본지는 외국의 언론관계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프랑스의 「정정보도청구권」에 대한 해설(1985년 봄호), 오스트리아의 「언론법(1988년 가을호), 영국의 「반론권에 대한 법률」(안)(1989년 봄호), 덴마크의 「언론법(1989년 여름호)등을 번역, 소개한 바 있습니다. 이번 호부터는 포르투갈의 2개 언론관계법(언론위원회법, 출판법)을 3회에 걸쳐 나누어 게재할 예정입니다. 이번 호에서는 언론위원회법을, 그리고 출판법은 1990년 봄호·여름호에 상·하로 나누어 소개할 것입니다. 훈 언론관계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최영수 교수께서 번역하였습니다.

공화국 국회는 헌법 제 39 조 4 항 제 164 조 d), 제 168 조 1 항의 b) 및 제 169 조 2 항에 의거,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.

언론위원회의 구성과 임무

제 1 장 성적, 속성 및 권한

제 1 조(언론위원회)

본 법령은 언론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를 규정한다.

제 2 조(성격)

언론위원회는 공화국 국회의 부설기구로 두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.

제 3 조(범위)

1. 언론위원회는 국가 및 다른 공공단체 혹은 재정관리에 있어 국가 및 공공단체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종속된 단체에 속하는 언론기관들에 대해 그리고 전국에 걸쳐 권한을 행사한다.
2. 본 법령의 발호와 더불어 자산 혹은 기업의 국가 및 공공단체 혹은 재정 관리에 있어 이들에 의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종속된 단체의 모든 정기 간행물, 통신사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은 언론기관으로 간주된다.
3. 정부와 공공단체 가 대부분의 자본을 소유한 단체들은 재정 관리에 있어 정부와 공공단체들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종속된 단체들로 간주된다.

제 4 조 (속성)

언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갖는다.

- a) 정부, 행정부 및 공권력에 대해 전 조항에 관련된 언론기관들의 독립성을 보호한다.
- b) 동 기관들에 대해 사상적 복수주의를 존중하고 정보의 엄격성과 객관성을 보장케 하는 일반적인 지도와 아울러 다양한 흐름의 견해를 대조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.

제 5 조 (권한)

본 법령에 관계된 언론기관들에 대한 속성의 운용에 있어서, 언론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권한이 부여 된다.

- a)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의 적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도했는지를 평가한다.
- b) 전 조항에 기록된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는 권고 및 지시사항을 관리 및 지도 기구에 전달한다.
- c) 각 감독관 혹은 여하한 직책으로 정보 혹은 프로그램 제작 부서에서 감독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랑의 임명 및 면직에 대해 사전에 공개적이며 근거 있는 의견을 보낸다.
- d) 관리, 감사 혹은 감독기구, 혹은 공화국 국회, 정부, 자치지역의 정부기구 혹은 기자들의 대표 단체 등에 의해 청원된 의견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의사를 표시한다.
- e) 직업상의 비밀보장과 정보원에 대한 공개의 자유에 대해서는 출판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와 관계없이, 본 위원회의 임무수행에 속하는 어떠한 정보라도 정부나 행정부뿐만 아니라 관리, 감사 혹은 감독기구 및 편집위원회에 요구한다.
- f) 관리, 감사 혹은 감독기구 및 편집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본 위원회의 회의에, 혹은 일부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한다.
- g) 언론활동의 범위에 책임있는 정부 혹은 지역정부의 구성원들이 본 위원회의 회의에, 혹은 일부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혹은 그들의 출석을 요구한다.
- h) 의사일정에 기재된 어떠한 기록이라도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어떤 다른 단체나 사랑들로부터 청취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서의 발부 여부를 토의 의결한다.
- i) 공공분야의 언론매체에 적용할 수 있는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의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, 개인 혹은 단체에 의해 신청된 불만사항을 본 법령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, 이 불만사항에 대해 확실히 통보를 받을 경우에는 이를 해당 단체에 이송하면서 진위를 평가한다.
- j) 앞의 4 조에 언급된 지도와 본 위원회에 의해 공식표명 된 지시와 권고사항을 면적으로 무시하는 관리, 감사 혹은 감독기구의 어느 구성원에 대해서도 이 제안에 관해 정당한 이유와 그 근거를 설명하면서 해당 단체에 규율을 지키게 절차를 세우도록 제안한다.
- k) 본 위원회의 속성과 권한에 관계된 사실들을 조회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한다.
 - 1) 본 위원회의 속성과 권한의 보다 나은 기능이나 혹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규를 공화국의 국회나 정부에 제안 한다.
- m) 언론의 공공분야에 관련된 법규의 수정을 공화국 국회, 정부 혹은 자치구역의 지역 의회에 권고하며, 이에 관계된 법규 발의에 대해 의사를 표명 한다.
- n) 법률에 의해 본 위원회에 위임된 다른 활동을 실시 한다.

제 6 조(의결의 성격)

제 5 조의 b), e) 그리고 f)항에 관련된 언론위원회의 의결은 각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.

제 7 조(위원의 임명과 면직)

1. 위원회 임명 및 면직에 대한 의견은 15일 이내에 표명되어야 하며, 이 일자의 종료와 더불어 위원회 활동이 자유롭게 실행될 수 있다.
2. 이 의견은 위원회 관계된 활동이 실행되기 전에 그 근거를 갖추어야 하며 그리고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.
3. 명백히 위급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이 있을 때까지 사무처에서 위원을 모두 임명할 수 있다.

제 8 조 (보고원칙)

1. 언론위원회는 출판과 방송이 이루어진 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24시간 내에 본 법령에 의해 포함된 기업들의 출판물 사본, 협조 혹은 프로그램을 요구하여 무상으로 수취할 권리를 갖는다.
2. 언론위원회는 본 법령과 관계된 언론기관들이 이들에게 적용 가능한 헌법상의 그리고 법률상의 기준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알 목적으로 이 기관들로부터 1년 중 전·후반기에 각각 2개의 보고서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다.

제 9 조 (활동보고서)

언론위원회는 1년 중 전·후반기에 걸쳐 두개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, 이 보고서에는 표결에 의한 각각의 찬·반 견해와 모든 의결사항들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또한 이는 평가를 받기 위해 공화국 국회로 그리고 이 사항을 통고하기 위해 정부로 발송된다.

제 10 조 (협조의무)

본 법령에 관계된 언론기관들은 본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방해하거나 혹은 권고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근로자, 관리, 감사 혹은 감독기구의 구성원들을 중대한 규율위반으로 처리하면서, 언론위원회에 모든 협조를 기울여야 한다.

제 2 장(언론위원회의 위원)

제 11 조 (구성)

언론위원회는 공화국 국회에서 선출된 11명의위원으로 구성된다.

제 12 조 (부적격자)

정치적 그리고 민법상의 권리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언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 13 조 (겸직금지)

언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.

- a) 사법부를 제외한 통치기구와 자치지역 정부의 기구에 관련된 직책.
- b) 지방자치권의 의결 및 실행기구의 직책
- c) 어떠한 언론기관의 근로자 및 관리, 감사 혹은 지도기구의 구성원.
- d) 공화국 국회에 의해 사안별로 인정된 바와 같이 학문연구행위나 혹은 이와 유사한 행위, 그리고 고등교육을 무보수로 해주는 교직 직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행정부의 근로자, 국가 혹은 여타 공공단체의 관리.

제 14 조 (권리행사의 제한)

언론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이나 혹은 정치적인 모임에서 어떠한 지도적인 임무를 행사함이 금지되는데, 이것은 그들이 그러한 단체에서 어떤 업무적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.

제 15 조 (선거형태)

1. 후보로서 피선거권의 증빙요소나 입후보 수락에 대한 적당한 의사표명이 확실하게 검토된 입 후보자는 선거일로 지정된 날로부터 5 일전까지 국회의원의 최소 25 인 그리고 최대 50 인에 의해 공화국 국회의장에게 추천된다.
2. 보충되어야 할 공석에 최소한 같은 숫자의 인원이 입후보자로 소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입후보자의 소개를 위해 3 일 동안의 새로운 기간이 설정된다.
3. 어느 국회의원도 보충되어야 할 전체 공석보다 더 많은 입후보자에게 추천서명을 할 수 없다.
4. 선거일로 지정된 날로부터 2 일전까지 공화국 국회의장은 입 후보자들의 인명부를 작성하고, 이를 공화국 국회일보에 공포한다.
5. 투표용지에는 모든 입후보자의 성명이 알파벳 순서로 기재되어 있으며, 각 입후보자의성명 앞에는 빈 사각형이 그려져 있다.
6. 국회의원 각자는 자신이 찬성하는 각 입후보자의 성명 앞 사각형에 십자표를 하며 무효투표의 벌칙에 따라 보충되어야 할 공석의 숫자보다 더 많은 입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없다
7.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, 출석의원 3 분의 2 이상의 표를 획득한 입 후보자는 당선으로 간주된다.
8. 만약 3 번 이상의 투표를 거치고 보충되어야 할 공석 과 같은 수로 표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모든 공석이 보충되지 않는다면,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회수만큼 반복된다.
9. 각 후보 선출은 모든 공석이 보충된 후에 확정된다.
10. 당선자 명단은 결의문 형식으로 공화국일보 제 1 집에 공포된다.

제 16 조(회장 및 부회장 선거)

1. 언론위원회의 위원들은 비밀투표를 통해, 위원들 가운데에서 각각 1 인의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한다.
2. 회장은 최소한 7 표를 획득해야 당선된다.
3. 부회장은 최소한 6 표를 획득해야 당선된다.

제 17 조 (임명)

언론위원회의 위원은 제 15 조 10 항에 예고된 공표일로부터 10 일 후에 공화국 국회의장에 의해 임명된다.

제 18 조 (임기)

1. 언론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4 년이다.
2. 언론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시작하여,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명과 더불어 끝난다.
3. 언론위원회의 위원은 한 번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.

4. 회장과 부회장은 임기의 중단 없이 2년에 한번씩 선출되며, 재선이 허용된다.

제 19 조 (면직금지)

언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, 임명된 4년간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자신의 직위를 그만둘 수 없으며, 동시에 다른 직책으로 이동할 수 없다.

- a) 사망 혹은 장기적인 신체적 이상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차질.
- b) 직무사임.
- c) 임기상실.

제 20 조 (사임)

- 1. 언론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에게 제출한 서면을 통해 직무를 사임할 수 있다.
- 2. 직무사임은 공화국 국회의장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이는 공화국 국회일보 제 2집에 공표되어야 한다.

제 21 조(해임)

- 1. 다음의 경우 언론위원회의 위원은 해임된다.
 - a) 본 법령에 예고된 어떤 부적격자, 겸직불능사항에 포함되거나 혹은 제 14 조의 규정 사항을 위반할 경우.
 - b) 직무행사와 더불어 겸직이 불허된 직위를 고수 혹은 수락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경우
 - c) 질병이나 혹은 회장이 인정할 만 하다고 생각한 경우를 제외하고, 계속해서 3 회 또는 6 회 회의에 불참할 경우.
- 2. 해임은 언론위원회의 동의를 근거로 공화국 국회에 의해 공포된다.

제 22 조 (결원보충)

- 1. 언론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발생한 결원은 최초 선거에서 채택한 방식에 따라 보충된다.
- 2. 결원에 충원된 위원은 전임자의 직무를 수행 한다.

제 23 조 (면책특권)

언론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 표명한 표결 및 의견에 대해 민법적, 사법적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다.

제 24 조(권리와 특권)

- 1. 언론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행정부의 관리에게 부여되는 권리 및 특권과 마찬가지로 공직 A 급에 상당하는 보수가 부여된다.
- 2. 언론위원회의 위원은 모든 정기간행물 한부를 수취할 권리를 가지며, 또한 각 기업이 법률상 의무적으로 기록대장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내에, 본 위원회의 위원이 긴급한 요청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뉴스물을 요청할 때 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 혹은 청취 할 권리를 갖게 된다.

제 25 조 (직무보장)

- 1. 업무수행의 극대화를 위해 언론위원회의위원에 원근무지에 결근한 경우, 이것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.
- 2. 언론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의 업무수행에 의해 자신의 직무, 사회적 특권 혹은 자신의 직업상의 어떤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.

3. 언론위원회의 임기를 마친 위원은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당시까지 수행했던 직무를 자동적으로 다시 수행하며, 다만 각 직책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.
4. 업무수행기간 중 언론위원회의 위원은 직장에서 호봉의 피해를 받지 않으며, 또한 승진의 권리를 훼손당하지 않는다.
5. 본 위원회의 위원이 임명으로 인해 법률, 활동 또는 계약에 의해 일시적인 공직 또는 직무를 부여 받게 될 경우, 언론위원회에서의 업무수행은 적당한 기간 동안 정지된다.

제 26 조 (업무규칙)

1. 언론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적인 업무체계 내에서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
2. 업무누적이 본 위원회의 원만한 업무수행에 차질을 줄 경우, 이에 해당하는 검직금지를 공화국 국회에 표명한다.
3. 선거일 당시까지 행정부의 근로자, 주 정부 또는 여타 공공단체의 관리인 언론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보수체계를 택할 수 있다.
4. 보수가 지급되는 업무가 누적될 경우, 언론위원회의 위원은 법률상 공공관제 A 급으로 규정된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령하며, 상기 위원이 출석하는 매 회의당, 기본 보수의 2%에 상응하는 출석표에 대해서도, 권리를 갖는다.
5. 언론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출석하는 매회의 당, 공공관제 A 급에 대해 규정된 금액과 조건하에서 선불 받아 보조비 및 교통비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

제 27 조 (의무)

1. 언론위원회의 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 - a) 각 위원에게 부여된 중요한 사회적 기능에 속한 임무를 독립적으로, 공평무사하게 그리고 사려 깊게 수행 한다.
 - b) 높은 도덕적 권위에 입각하여 각자의 업무를 수행 한다.
 - c) 언론위원회의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자신의 근면, 열성, 헌신력 그리고 모범을 발휘 한다.
2. 언론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엄성을 보장할 목적으로, 본 위원회에 의해 평가의 대상이 되는 논점 혹은 이 논점에 대한 각 위원의 견해 등의 누설을 금한다.

제 3 장 언론위원회의 기능

제 28 조 (내부규정)

1. 언론위원회는 내부규정을 두며, 이는 관계국회위원회의 의결이 통보된 날짜로부터 계산하여 최대 30 일 이내에 공화국 국회의장에 의해 승인된다.
2. 본 규정은 공화국 국회일보 제 2 집에 공표된다.

제 29 조 (회장직)

1. 회장은 언론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회의를 소집 · 주재 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의 부재 또는 직위해제의 경우 회장직을 대행한다.

제 30 조 (회의)

1. 언론위원회는 최소한 1 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개최한다.

2. 본 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.

- a) 공화국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.
- b) 본 위원회 회장의 발의가 있을 경우.
- c) 본 위원회의 위원 3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.

제 31 조 (업무순서)

1. 업무처리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규칙상 그 문제들의 속성을 고려하면서 본 위원회에 의해 확정 된다.
2. 본 위원회는 매 회의에서 업무순서에 기입된 문제처리에 있어 그 순서를 변경 혹은 새로운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으나, 이는 그러한 변경의 중요성과 사안의 우선순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 구성원으로부터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가능하다.
3. 회장이 본 위원회의 어느 위원에 의해 제안 받은 사안을 당일의 순서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, 동 사안은 다음 회의의 업무순서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.
4. 당일의 순서 전에 위원들이 언론위원회에 당연히 소개되어야 한다고 이해하는 사안들을 소개하기 위해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다.

제 32 조 (의결정족수)

언론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일 때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.

제 33 조(의결)

언론위원회의 의결은 효력발생에 필요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에 의해 이루어진다.

제 34 조(회의 공개)

본 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회의는 공개된다.

제 35 조 (의결공고)

1. 언론위원회의 권고 및 지시사항은 공화국일보 제 2 집에 의무적으로 공표되며, 이와 관련된 언론기관에 비공식서한으로 전달된다.
2. 언론위원회의 의결 및 보고서는 관계단체에 발송할 필요 없이 공화국 국회일보 제 2 집에 공표된다.

제 36 조 (조사위원회)

본 위원회는 내부규정을 통해 본 위원회가 당연히 구성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조사위원회에 대한 권한, 명칭 그리고 방법을 규정한다.

제 37 조(재정, 인원 및 설비)

1. 언론위원회의 임무수행에 따른, 본 법률에 예고된 재정은 공화국 국회에 귀속된 예산상의기 금으로 충당된다.
2. 본 위원회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설비, 가구 및 비품을 공화국 국회에 청구할 수 있다.
3. 언론위원회는 공화국 국회의 시설 혹은 공화국 국회가 지정하여 설비된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한다.

제 4 장 최종 및 잠정 규정

제 38 조(최초선거)

1. 최초 선거에서 공화국 국회에 의해 임명된 11 명의 위원 중 5 명은 본 회의 구성에 부분적인 혁신을 일으킬 목적으로 추첨을 통해 2 년으로 축소된 임기를 갖는다.
2. 추정은 언론위원회의 규정에서 다른 방법으로 시행된다.

제 39 조(폐지법률)

1. 9 월 30 일의 헌법 제 1/82 번의 제 28 조 2 항의규정 사항과 관계없이 현행법에 위배되는 많은 법률상의 규정뿐만 아니라 2 월 28 일의 11 번, 8 월 14 일의 67/68 번 그리고 8 월 25 일의 78/79 번은 폐지된다.
2. 전項에 고려되지 않은 법규에 포함된 정보협의회에 관한 참고사항은 언론위원회에 보고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.

제 40 조 (시행)

본 법령은 공포된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1983 년 7 월 15 일에 승인됨.

공화국 국회 의장 마누엘 알프레두 띠뚜 드 모 라이스.

1983 년 8 월 20 일 공포됨.

공화국 대통령 안토니우 라말뉴 에아네스 1983 년 8 월 27 일에 연서됨.

수상 마리우 소아리스